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을 받기 위한 수속

韓国語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이하 「취학 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를 국가가 학생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대여형 장학금과는 달리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입 1 학년생은 2 회(4 월과 7 월)의 신청수속이 필요합니다(7 월 수속은 매년 필요합니다).

지급대상의 요건

- 보호자의 「시·정·촌 소득할주민세액」이 304,200 엔 미만일 것. 연수입으로는 910 만엔 정도이지만, 부양 등의 조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4 월은 전년도 분의 액수, 7 월은 금년도 분의 액수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 합계액으로 합니다.
- 고교에 재학한 기간이 통산 36 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을 것.
정시제·통신제 과정의 경우는 48 개월입니다. 국립·공립·사립 모두 해당합니다.
- 신청서와 과세증명서 등을 기한 내에 학교에 제출할 것.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업료는 연간 118,800 엔으로, 4 분기로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취학 지원금의 수급에는 심사가 있습니다. 4 월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7 월 상순(예정)에 학교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수속에 필요한 과세증명서 등에 대하여

- ① 「課税 証明書, 과세증명서」는 시·정·촌 세금 증명서 창구에서 발행됩니다.
유료입니다.
 - 소득공제, 부양공제 등 항목을 생략하지 않고 모두 기재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생활보호 수급 세대인 분은 「生活 保護 受給 証明書, 생활보호 수급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課税 証明書, 과세증명서」, 「生活 保護 受給 証明書, 생활보호 수급증명서」는 모두 3 개월 이내에 발행된 원본이 필요합니다. 복사된 것은 무효입니다. 제출된 원본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② 「課税 証明書, 과세증명서」를 대신하여 다음 서류를 복사하셔도 됩니다.
 - 급여(샐러리맨) 세대로, 급여 소득만 소득이 있는 분은, 작년 5~6 월 경에 근무처로부터 배부된 「特別 徴収 税額 の 決定 通知書 (納税 義務者用)」, 특별징수세액의 결정통지서(납세의무자용)

- 자영업 세대 등에 해당하는 분은 작년 5~6 월 경에 시·정·촌으로부터 송부받은 「のうぜいつうちしよ納稅 通知書, 납세통지서」
- 상기 서류들은 모두 「かぜいしょうめいしよ課稅 証明書, 과세증명서」를 대신하여 「증명서」로서 제출 받는 서류이므로 연도, 주소, 성명, 소득공제·부양공제의 내용, 발행자명, 공인이 모두 명료하게 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수정신고나 경정에 의해 세액이 변경된 경우나 그 밖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かぜいしょうめいしよ課稅 証明書,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A3 용지를 사용해, 실제 크기로 분할하지 않고 용지 1 장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도록 복사해 주십시오.
- 「のうぜいつうちしよ納稅 通知書, 납세통지서」가 2 장 이상인 경우는, 모든 페이지를 실제 크기로 복사해 주십시오.
- 「げんせんちゆうしゆうひょう源泉徵收票, 원천징수표」나 「かくていしんこくしよ確定申告書, 확정신고서」 부분은 「かぜいしょうめいしよ課稅 証明書, 과세증명서」 대신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학을 위한 급부금을 받기 위한 수속

장학을 위한 급부금(이하 「장학급부금」)은 보호자 전원(부모양쪽)의 「시·정·촌 소득할주민세액」이 비과세인 세대(이하 「비과세 세대」) 또는 생활보호 수급 세대에게, 수업료 이외의 교육에 관한 경비로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수속은 보호자가 거주하고 있는 도·도·부·현에서 연 1 회(7 월) 행합니다.

지급액(연액)은 생활보호 수급세대가 32,300 엔, 비과세 세대가 80,800 엔입니다.

단, 비과세 세대에서 부양받고 있는 형(오빠), 누나(언니)가 고등학생의 경우 또는 비과세 세대로 고등학생 외에 15 세 이상 23 세 미만의 중학생 이외의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129,700 엔입니다. 이 경우 가족의 부양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취학 지원금과 장학 급부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보호자 전원이 비과세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학 급부금을 이체할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의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학교 또는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시설재무과(06-6941-0351)